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
수석전문위원 김홍식

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자 : 박지현 의원 등 7인

2. 발의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2년 11월 18일

나. 회부일자 : 2022년 11월 21일

3. 제안이유

- 조례에서 규정한 생태·경관 보전지역의 지정, 행위제한 및 자연환경조사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지속가능한 자연환경보전을 이루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생태·환경보전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(안 제4조)
- 생태·환경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6조)
- 자연환경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(안 제17조)

5. 검토내용

- 안 제4조는 생태·환경보전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하게 구체화하였음.
- 안 제6조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도지사의 권한을 추가하여 생태·환경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- 안 제17조는 상위법령에 맞추어 용어 정비 및 자연환경조사에

관한 사항 일부를 신설(제3항 제1호, 제6호, 제7호)하고 그 밖에 관련 사항을 정비하였음.

- 관련부서에서 조례 개정에 따른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, 기타 “특이한 사항” 은 없음.
- 기타 조문 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, 조례안 예고(‘22. 11.23.~‘22. 11.29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함.

6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기존 조례에서 규정한 생태·경관 보전지역의 지정을 구체화하고, 그 지역의 행위제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부여하는 것과 자연환경 조사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